

인천광역시서구

공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http://www.seo.incheon.kr/>

선 람	기관위원장

제1158호 2016. 03. 16.(수)

차 례

조 례

- 인천광역시서구 조례 제1375호 인천광역시 서구 해병전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 ----- 1

공 고

- 인천광역시서구 공고 제2016-396호 인천도시관리계획(북항배후부지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입안(안) 열람·공고 ----- 3
- 인천광역시서구 공고 제2016-405호 인천광역시 서구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안 입법예고 ----- 6
- 인천광역시서구 공고 제2016-406호 인천광역시 서구 푸른희망 서구의제21 실천협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25

인천광역시 서구의회에서 의결된 인천광역시 서구 해병전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강 범 석

2016년 3월 16일

인천광역시 서구 조례 제1375호

인천광역시 서구 해병전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회 일반의 이익에 공여하고 주민을 위한 재난복구 및 구호활동 등의 봉사활동에 참여하는 인천광역시 서구 해병전우회에 대한 지원 보조금의 효율적인 운영과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인천광역시 서구 해병전우회(이하 ”전우회“라 한다)”란 해병대 출신 전역자들이 결성한 조직체로서 지역 공익행사 지원과 주민을 위한 재난복구 및 구호활동 등의 봉사활동에 참여하는 단체를 말한다.
2. “재난복구”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가목 및 나목의 자연재난과 사회재난에 대하여 재난발생 이전상태로 회복시키기 위한 일련의 활동을 말한다.
3. “구호활동”이란 재해 및 재난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사람에 대하여 도움을 주고 보호해 주는 일련의 활동을 말한다.
4. “봉사활동”이란 재난·안전 관련 단체가 주민과 지역사회를 위하여 영리적 반대급부 없이 자발적으로 시간과 노력을 제공하는 행위를 말한다.

제3조(지원대상사업 등) 인천광역시 서구청장은 지역주민의 생명과 재산보호를 위하여 전우회에서 추진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교통안전 및 교통질서 지키기 홍보
2. 야간방범 순찰 활동 사업
3. 수상 안전사고 예방 사업
4. 해양과 하천의 오염방지 및 수중정화 활동 사업
5. 그 밖에 서구지역에서 개최하는 공익행사 지원 사업

제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인천광역시서구공고 제2016 - 396호

인천도시관리계획(북항배후부지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입안(안) 열람·공고

인천도시관리계획(북항배후부지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을 위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2조에 따라 주민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 3. 17.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1. 지구단위계획구역에 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 (변경없음)
2. 지구단위계획에 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 (변경)
 - 가. 용도지역·용도지구의 세분 및 세분된 용도지역·용도지구간의 변경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변경없음)
 - 나. 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 (변경)
 - 1) 교통시설 [변경]
 - 가) 도로
 - 도로 총괄표

유별	합계			1류			2류			3류			
	노선수	연장(m)	면적(㎡)	노선수	연장(m)	면적(㎡)	노선수	연장(m)	면적(㎡)	노선수	연장(m)	면적(㎡)	
합계	기정	35	15,297	344,033	10	6,380	175,089	23	8,257	146,866	2	660	22,078
	변경	35	15,264	344,879	9	6,115	172,435	24	8,489	150,366	2	660	22,078
광로	1	487	19,956	-	-	-	-	-	-	1	487	19,956	
대로	7	4,690	162,211	4	3,101	113,097	3	1,589	49,114	-	-	-	
중로	기정	22	9,288	154,454	4	2,901	58,212	17	6,214	94,120	1	173	2,122
	변경	23	9,520	157,954	4	2,901	58,212	18	6,446	97,620	1	173	2,122
소로	기정	5	832	7,412	2	378	3,780	3	454	3,632	-	-	-
	변경	4	567	4,758	1	113	1,126	3	454	3,632	-	-	-

도로 결정(변경)조서

구분	규 모				기 능	연장(m)	기 점	종 점	사용형태	주요 경과지	최초결정일	비 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m)								
기정	소로	1	2	10	특수도로	265	광2-4	중1-1	보행자 전용도로	-	인고 2012-5 (2012.01.16.)	
폐지	-	-	-	-	-	-	-	-	-	-	-	
신설	중로	2	C	15	국지도로	232	중1-1	석남동 342-13	일반도로	-	-	

■ 도로 결정(변경) 사유서

변경전 도로명	변경후 도로명	변경 내용	변경 사유
소로 1-2	-	○도로 폐지	○가구 및 획지계획 변경에 따른 도로 폐지
-	중로 2-C	○도로 신설 - B=15m, L=232m	○가구 및 획지계획 변경에 따른 이면도로 신설

2) 공간시설

가) 녹지 [변경]

□ 녹지 결정조서

구분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세분	위 치	면 적 (㎡)			최 초 결정일	비 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변경	1	녹지	완충녹지	석남동 642번지 일원 → 석남동 642-4번지 일원	22,522	증)404.0	22,926.0	인고 2012-5 (2012.01.16.)	-
변경	6	녹지	완충녹지	석남동 642번지 일원 → 석남동 642-11번지 일원	11,531	감)11.6	11,519.4	인고 2012-5 (2012.01.16.)	-

■ 녹지 결정(변경)사유서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변경 내용	변경 사유
1	완충녹지1	○면적 변경 ○위치 : 석남동 642번지 일원 → 642-4번지 일원 ○면적 : 22,522㎡ → 22,926.0㎡ (증 404.0㎡)	○지적분할측량 결과 반영 및 보행자도로 폐지에 따른 면적 변경
6	완충녹지6	○면적 변경 ○위치 : 석남동 642번지 일원 → 642-11번지 ○면적 : 11,531㎡ → 11,519.4㎡ (감 11.6㎡)	○지적분할측량 결과 반영 및 도로신설에 따른 위치와 면적 변경

다. 가구 및 획지의 규모와 구성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

□ 공업용지의 가구 및 획지 결정(변경) 조서

가구번호	기 정		변경				비 고	
	면 적(㎡)	획 지 위 치	면 적(㎡)	가 구 번호	면 적(㎡)	획 지 위 치		
I-6	22,888	1	22,888	I-6	-	-	도로폐지에 따라 I-7과 통합	
I-7	59,557	1	59,557	I-7	79,307.5	1	59,913.7	측량결과 반영
						2	19,393.8	필지 분할요건 적용
-	-	-	-	I-14	90,458.0	1	40,870.7	-
						2	49,587.3	-

※ I-7-2필지 분할 요건

구분	분할요건	기 타
필지형태	정방형 또는 장방형(1:1~2이하)	세가지 요건 충족시 필지분할 가능
필지구모	최소필지구모 3,500㎡ 이상	
전면도로	1면 이상 도로에 접하여야 함	

□ 특별계획구역의 가구 및 획지 결정(변경) 조서

기 정				변 경				비 고		
도면 번호	가구 번호	면 적(m ²)	획 지		도면 번호	가구 번호	면 적(m ²)		획 지	
			위 치	면 적(m ²)					위 치	면 적(m ²)
계			1획지	87,643	-			-	-	-
VI	1	87,643	1	87,643	-	-	-	-	-	-

라. 건축물에 대한 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배치·형태·색채·건축선에 관한 도시계획결정(변경) 조서

가) 공업용지

도면번호	위 치	구 분	계 획 내 용		비 고
I	가정 I-6, 7, 8	용 도	허 용	○공장(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 설립에 관한 법률) 의 도시형 공장에 한함, 창고 시설,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자동차관련시설, 판매시설 (당해 공장에서 생산되는 제품을 판매하는 시설에 한함)	
			불 허	○허용용도 외의 용도	
		건폐율	○50% 이하		
		용적률	○300% 이하		
		건축한계선	○6m		
			○I-8블럭 : 3m, 북측변 20m		
	변경 I-7, 8	용 도	허 용	○공장(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 설립에 관한 법률) 의 도시형 공장에 한함, 창고 시설,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자동차관련시설, 판매시설 (당해 공장에서 생산되는 제품을 판매하는 시설에 한함)	
			불 허	○허용용도 외의 용도	
		건폐율	○50% 이하 ^{주2)}		
		용적률	○300% 이하		
		건축한계선	○대로1-7호선변 : 6m		
			○도시계획도로변 : 3m ○I-8블럭 : 3m, 북측변 20m		
I-14 (신설)	용 도	허 용	○제1종근린생활시설, 제2종근린생활시설(단란주점 및 안마시술소는 제외), 문화및집회시설, 판매시설, 의료시설(정신병원, 격리병원은 제외), 교육연구시설, 운동시설, 업무시설(오피스텔 제외), 공장, 창고시설, 위험물저장및처리시설, 자동차관련시설		
		불 허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건폐율	○50% 이하			
	용적률	○300% 이하			
	건축한계선	○중 1-1호선변 : 3m / 대2-29호선변 : 6m			

주2 : I-7가구에 건축되는 공장, 창고용도에 한하여 70% 이하

나) 특별계획구역 : 특별계획구역 해제

마. 기타사항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변경 없음)

3. 열람기간 및 의견제출 방법

- 열람기간 : 공고일로부터 14일간
- 의견제출 : 상기 입안내용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분은 열람기간 내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및 도면 게재 생략 : 열람 장소에 비치

4. 열람장소 : 인천광역시 서구청 도시개발과 (☎560-4763)

인천광역시 서구 공고 제2016 - 405호

「인천광역시 서구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을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인천광역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에 의거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6. 3. 16.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인천광역시 서구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안 입법예고

1. 개정사유

「인천광역시 서구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의 사회적기업 범위를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협동조합 등으로 확대하여 사회적경제조직의 육성 및 지원정책을 총괄하여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사회적경제조직의 발굴 및 육성 및 종합적인 서비스를 지원하기 위한 사회적경제지원센터의 설치 운영의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사회적경제조직의 용어 및 개념 정의(안 제2조)
- 나. 사회적경제 육성계획의 수립·시행 (안 제3조)
- 다. 사회적경제육성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안 제4조부터 안 제10조)
- 라. 사회적경제 활성화 지원(안 제11조부터 안 제16조)

- 마.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설치근거 신설(안 제17조부터 안 제24조)
- 바. 우선구매 촉진에 관한 사항(안 제30조)

3. 의견제출

이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16년 4월 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인천광역시 서구청장(참조 : 일자리지원과장)에게 제출 바랍니다.

- 전 화 : 560 - 2967, 팩 스 : 560 - 2731

-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 나. 의견제출자의 주소·성명(단체 또는 법인의 경우에는 그 단체명 또는 법인명과 대표자 성명) 및 전화번호

인천광역시 서구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서구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인천광역시 서구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인천광역시 서구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로 한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회적경제조직의 설립 및 운영을 지원하고 사회적경제 생태계를 조성하여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고 사회서비스를 확충함으로써 사회통합과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사회적경제”란 삶의 질 증진, 빈곤 및 소외극복 등 공공의 이익이라는 사회적가치 실현을 위해 협력과 호혜를 바탕으로 사회적경제조직의 생산, 교환, 분배, 소비가 이루어지는 경제시스템을 말한다.
2. “사회적경제조직”이란 인천광역시 서구(이하 “구”라 한다)에 소재하고 공공의 이익이라는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면서 재화 및 서비스를 생산, 교환, 분배, 소비하는 사회적기업, 예비사회적기업, 마을기업, 협동조합, 자활기업 등과 이와 관련된 중간지원조직 등을 말한다.

- 가. “사회적기업”이란 「사회적기업 육성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기업을 말한다.
- 나. “예비사회적기업”이란 고용노동부의 사회적기업으로 인증받지는 않았으나 사회서비스의 제공, 취약계층에 대한 일자리 제공 등 사회적기업으로서의 실체를 갖추고 중앙부처장 또는 인천광역시장이 사회적기업으로 전환·육성하기 위하여 지정한 기업을 말한다.
- 다. “마을기업”이란 마을주민이 주도적으로 지역의 각종 자원을 활용하여 안정적 소득 및 일자리를 창출하는 마을단위의 기업으로 인천광역시에서 선정하고 중앙부처에서 지정한 기업을 말한다.
- 라. “협동조합”이란 「협동조합 기본법」에 따라 설립 등기를 마친 협동조합, 협동조합연합회, 사회적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를 말한다.
- 마. “자활기업”이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8조에 따라 설립된 기업을 말한다.
- 바. “중간지원조직”이란 중앙부처 또는 지방자치단체와 사회적경제조직 간의 가교역할, 사회적경제조직 간의 연계, 사회적경제조직 지원 등 사회적경제 생태계 조성을 지원하는 조직을 말한다.
3. “취약계층”이란 법 제2조제2호의 계층을 말한다.
4. “사회서비스”란 법 제2조제3호의 서비스를 말한다.
5. “연계기업”이란 법 제2조제4호의 기업을 말한다.
6. “사회적경제 생태계”란 사회적경제조직의 설립 및 발전, 시장 조성

및 이해관계자의 다양한 참여, 재생산과 재투자 등이 선순환적으로 이루어지는 시스템을 말한다.

제3조(사회적경제 육성계획 수립·시행) ① 인천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사회적경제조직을 체계적으로 육성 및 지원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서구 사회적경제 육성계획(이하 “육성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육성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사회적경제조직의 육성을 위한 비전과 전략
2. 사회적경제조직의 발굴 및 육성에 관한 사항
3. 사회적경제조직의 활성화를 위한 기반조성에 관한 사항
4. 사회적경제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관한 사항
5. 사회적경제조직과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의 협력에 관한 사항
6. 재정, 교육, 홍보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사회적경제 생태계 기반조성에 필요한 사항

제4조(사회적경제육성위원회 설치) 구청장은 사회적경제조직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서구 사회적경제육성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5조(위원회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사회적경제 육성계획 수립 및 평가에 관한 사항
2. 사회적경제조직의 발굴 및 지원에 관한 사항
3.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한 사회적경제조직 및 유관기관 등의

협력에 관한 사항

4. 제17조의 사회적경제조직 지원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사회적경제조직의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6조(위원회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1. 사회적기업 등과 관련한 업무부서의 국장 및 복지업무 담당 국장
2. 학계 등 사회적경제 관련 전문가
3. 사회적경제조직의 현장 활동가
4. 인천광역시 서구의회에서 추천한 의원
5. 그 밖에 구청장이 사회적경제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사회적경제 업무 담당 부서장이 된다.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다만 공무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7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그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때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 본인이 원하는 경우
2. 장기 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6개월 이상의 해외여행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위원회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였거나 그 내용을 개인적으로 이용한 경우
4. 위원회의 직무와 관련하여 비위 사실이 있거나 위원직을 유지하기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비위 사실이 발생한 경우
5.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과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만료된 날로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및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사람의 경우
6.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9조(위원회 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나, 재적의원 과반수가 요청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중 소속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④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후 위원장이 정한다.

제10조(위원의 제척, 기피, 회피 등) 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안건의 심의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위원의 배우자이거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사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해당 사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의 관계에 있는 경우

2. 위원이 해당 사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사건에 관하여 진술이나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 당사자의 대리인으로서 업무에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경우

5. 위원이 속한 법인, 단체 또는 법률사무소가 해당 사건에 관하여 당사자의 대리인으로서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경우

6. 위원 또는 위원이 속한 법인, 단체 또는 법률사무소가 해당 사건의 원인이 된 처분 또는 부작위에 관여한 경우

② 위원장은 제1항에 따른 사유가 있는 경우에 관계 당사자의 신청을 받아 또는 직권으로 제척의 결정을 하여야 한다.

③ 당사자는 공정한 심의·의결 또는 조정 등을 기대하기 어려운 위원이 있는 경우에 그 사유를 적어 위원장에게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④ 위원장은 제3항에 따른 기피신청이 이유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기피의 결정을 하여야 한다.

⑤ 위원장은 사건이 접수되는 즉시 제2항에 따른 제척신청과 제3항에 따른 기피신청을 할 수 있음을 사건 당사자에게 알려야 한다.

⑥ 위원에게 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사건에 관한 직무집행에서 회피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위원은 위원장에게 그 사유를 소명하여야 한다.

제11조(경영지원 등) 구청장은 사회적경제조직의 설립과 운영에 필요한 경영·법률·기술·세무·노무·회계 등의 분야에 대한 전문적인 자문 및 정보 제공 등 각종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2조(재정지원) ① 구청장은 사회적경제조직의 자립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재정지원을 받은 사회적경제조직 등을 지도·감독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업무에 필요한 보고나 관계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지도·감독 결과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재정지원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고 인정될 때에는 지원금의 교부결정을 변경 또는 취소하거나 이미 교부된 지원금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

1. 사업비를 목적 외에 사용하거나 지원조건을 위반하였을 때
2. 법령 또는 조례를 위반하였을 때
3.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사업비를 지원 받았을 때
4. 정당한 사유 없이 6개월 이상 사업이 지연되었을 때

5.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을 위반하거나 허위 보고를 하였을 때

제13조(교육훈련 지원 등) 구청장은 사회적경제조직 구성원의 능력향상을 위하여 교육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제14조(우선구매 등 지원) ① 구청장은 사회적경제조직에서 생산하는 재화나 서비스의 우선구매 촉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우선구매의 실효성을 위하여 구분청, 소속기관 및 산하기관 등의 구매계획, 목표, 구매실적을 관리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민간의 소비 장려 등 사회적경제조직이 생산하는 재화나 서비스의 판로개척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15조(민간기업 등의 참여 확충) 구청장은 민간기업 및 단체 등이 사회적경제조직의 설립 및 육성에 참여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지역 내 사회적경제조직·민간기업·대학·단체 간 교류·협력 거버넌스의 구축 및 활동 지원
2. 연계기업의 활성화를 위한 참여기업 지원 확대

제16조(홍보 등) 구청장은 사회적경제조직 등에 대한 지역주민의 이해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마련할 수 있다.

1. 지역 내 모범모델의 발굴 및 확산을 위한 홍보지원
2. 지역 내 사회적경제조직의 제품 및 서비스의 품질 제고를 위한 홍보지원
3. 전문가 포럼, 워크숍 개최 등 사회적경제조직에 대한 인식 확산

제17조(사회적경제지원센터의 설치) 구청장은 사회적경제조직의 발굴 및 육성 등 종합적인 서비스를 지원하기 위하여 사회적경제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제18조(지원센터의 기능) 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사회적경제조직의 육성계획 수립 지원
2. 사회적경제조직 간의 협력 지원
3. 사회적경제조직 및 지원 정책에 대한 모니터링
4. 사회적경제조직 생산품 및 서비스의 판로지원
5. 지역사회 자원 연계 지원
6. 경영, 노무, 법률, 회계, 마케팅, 브랜드 강화 등 경영지원 활동
7. 예비사회적기업 발굴 심사 및 감독 지원
8. 참여기관 종사자 및 구민 교육·홍보 지원
9. 그 밖에 사회적경제조직의 지원을 위해 필요한 사항

제19조(지원센터의 위탁관리 및 운영) ① 구청장은 지원센터를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기 위하여 구 출연기관이나 제18조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여건을 갖추었다고 인정되는 사회적경제 관련 비영리법인이나 단체 등에 지원센터의 관리·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인천광역시 서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른다.

② 구청장은 지원센터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20조(위탁계약 및 기간) ① 구청장은 수탁자와 위탁기간 및 관리책임,

그 밖에 운영상 필요한 사항을 서면으로 계약하여야 한다.

② 위탁기간은 3년으로 하며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재위탁할 수 있다.

③ 수탁자는 재위탁을 희망하거나 포기할 때는 계약기간이 끝나기 3개월 전에 구청장에게 서면으로 신청하여야 하고, 구청장은 재위탁 여부에 대하여 계약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에 서면으로 알린다. 또한 수탁자는 위탁기간 중이라도 위탁 운영을 더 이상 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3개월 전에 구청장에게 서면으로 신청하여야 한다.

④ 위탁기간이 만료되어 재계약하고자 할 경우에 수탁자는 위탁기간 만료 3개월 이전에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하며, 구청장은 사회적경제 육성지원과 관련한 운영실적 등을 고려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재위탁 계약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제21조(수탁자의 의무) ① 수탁자는 지원센터를 운영함에 있어 관계 법령, 조례에서 정한 사항, 구청장의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매년 예산·결산보고서 및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여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수탁자는 위탁계약이 취소된 경우와 위탁기간이 만료되고 재위탁 계약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시설, 장비, 비품 등 구에서 지원한 물품 전부를 반환하여야 한다.

④ 수탁자는 위탁사무를 처리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구청장의 승인 없이 그 권리의 양도 및 대여를 임의로 변경할 수 없다.

⑤ 수탁자는 수탁계약 시 이행보증보험에 가입하거나 재정보증을 하여야 한다.

제22조(위탁의 취소) ① 구청장은 위탁기간 중이라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센터 운영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1. 보조금을 목적 이외에 사용하거나 부당한 방법으로 교부받았을 때
2. 수탁자가 관련법령 및 조례를 위반하여 운영하였을 때
3. 수탁자가 운영할 의사가 없거나 운영능력이 없다고 판단될 때
4. 수탁자가 제20조의 의무를 위반하였을 때
5. 수탁자가 제21조의 계약을 위반하였을 때
6. 수탁자가 위탁 조건을 위반하였을 때
7. 구청장이 직영하고자 할 때

② 구청장이 제1항에 따라 위탁계약을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수탁기관에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23조(위탁의 해지) 위탁계약 기간 중 법령이나 조례의 개폐 및 제정으로 지원센터의 폐쇄 등의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위탁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제24조(지도·감독) ① 구청장은 수탁자의 운영 실태에 대하여 연 1회 이상 감사를 실시하고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수시로 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감사결과에 따라 시정지시, 경고, 종사자의

징계요구, 지원센터의 운영정지·시설폐쇄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2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인천광역시 서구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행위로 이 조례에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른 것으로 본다.

제3조(위원회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의 시행에 따라 종전의 「인천광역시 서구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른 인천광역시 서구 사회적기업육성지원위원회는 이 조례 제4조의 『인천광역시 서구 사회적경제 육성위원회』로 전환한 것으로 본다.

인천광역시서구 공고 제2016 - 405호

규제영향분석서

I. 분석대상규제의 개요

1.규제사무명	1. 수탁자의 의무 2. 위탁의 취소 3. 위탁의 해지	2. 구 분						
		신설	○	강화		내용 심사		존속 기한 연장
3.소관부서명 및 작성자 인적사항	○ 부서명 : 일자리지원과 ○ 작성자 : 일자리지원과장 송 기 용							
4.근거법령명 등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10조(경영지원등) 및 동법시행령 제12조(경영지원업무의위탁)			관 련 규제수		3건		
5. 규제의 구분 및 분석방법	○ 규제의 구분 : 신설 ○ 분석방법(근거자료 제시) - 연 간 비 용 : 해당없음 - 피 규 제 자 수 : 서구 관내에서 사회적경제지원센터를 수탁받아 운영하고자 하는 자 - 경쟁제한적요소 : 없 음 - 국 제 기 준 : 해당없음							
6.종전규제및신설(변경) 규제의 내용	○ 종전의 규제 : 해당없음 ○ 신설(변경) 내용 제21조(수탁자의 의무) ① 수탁자는 지원센터를 운영함에 있어 관계 법령, 조례에서 정한 사항, 구청장의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매년 예산·결산보고서 및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여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수탁자는 위탁계약이 취소된 경우와 위탁기간이 만료되고 재위탁 계약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시설, 장비, 비품 등 구에서 지원한 물품							

전부를 반환하여야 한다.

④ 수탁자는 위탁사무를 처리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구청장의 승인 없이 그 권리의 양도 및 대여를 임의로 변경할 수 없다.

⑤ 수탁자는 수탁계약 시 이행보증보험에 가입하거나 재정보증을 하여야 한다.

제22조(위탁의 취소)

① 구청장은 위탁기간 중이라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센터 운영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 1. 보조금을 목적 이외에 사용하거나 부당한 방법으로 교부받았을 때
- 2. 수탁자가 관련법령 및 조례를 위반하여 운영하였을 때
- 3. 수탁자가 운영할 의사가 없거나 운영능력이 없다고 판단될 때
- 4. 수탁자가 제20조의 의무를 위반하였을 때
- 5. 수탁자가 제21조의 계약을 위반하였을 때
- 6. 수탁자가 위탁 조건을 위반하였을 때
- 7. 구청장이 직영하고자 할 때

② 구청장이 제1항에 따라 위탁계약을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수탁기관에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23조(위탁의 취소)

위탁계약 기간 중 법령이나 조례의 개폐 및 제정으로 지원센터의 폐쇄 등의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위탁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II. 평가요소별 규제영향분석

1. 규제의 신설 또는 강화의 필요성

가. 문제의 정의·내용

- 사회적경제조직의 발굴 및 육성 등 종합적인 서비스를 지원하기 위하여 사회적경제지원센터를 효율적으로 위탁 운영하고자 수탁자의 의무 및 취소기준을 설정

나. 문제발생의 원인

-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협동조합 등을 총괄하여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사회적경제지원센터의 설립 필요성 제기

다. 문제해결을 위한 규제의 필요성

- 사회적경제지원센터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법령의 범위 내에서 최소한의 규제가 필요함.

라. 규제의 목표설정

- 사회적경제지원센터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사회적경제지원센터의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고 사회적경제 육성 및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2. 규제목적의 실현가능성

가. 규제에 대한 반대 및 사회적 제약요소

- 사회적경제지원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공공질서를 해치지 않은 범위 내에서 최소한으로 규정된 사항으로 사회적경제지원센터의 신뢰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규제에 대한 사회적제약요소는 없음

나. 기술수준 기타 행정환경에 비추어 실현 가능성

- 본 규제는 기술수준과는 관계가 없으며 사회적경제지원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에 대한 기준을 설정한 사항으로 최소한의 규제이므로 실현 가능성 있음.

3. 규제의 대체수단의 존재 및 기존 규제 중복여부

가. 기존규제의 대체여부

- 그동안의 인천광역시 서구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는 사회적경제지원센터에 대한 위탁 설치 근거 없으므로 별다른 대체 대안이 없음

나. 규제의 다른 방법으로 목적달성 여부

- 규제의 다른 방법으로는 목적달성 불가함

다. 유사한 기존규제와 중복 여부

- 기존 유사한 규제 없음

라. 규제의 확대 재생산 가능성 여부

- 본 규제사항으로 또 다른 규제를 신설 하거나 강화할 가능성 없음

4. 규제의 비용과 편익의 비교분석

가. 규제의 비용분석

- 별도의 사회적 소요비용을 발생 시키지 않음.

나. 규제의 편익분석

- 사회적경제의 활성화를 위한 사회적경제지원센터의 위탁 및 설치로 지역사회의 사회서비스 확충 및 취약계층에 대한 일자리창출을 위한 사회적경제기업의 육성 및 발굴 등 사회적편익 발생효과가 큼

5. 경쟁제한적 요소 포함 여부

- 해당사항 없음

6. 규제내용의 객관성과 명료성

가. 규제기준·절차의 명확성

- 관련법 및 관련 지침 범위내에서 조례를 정하는 사항으로 법적하자가 없으며, 정확하고 일관성 있는 절차와 기준을 통하여 제정된 사항으로 객관성과 명료성을 확보함.

나. 규제의 법적근거 및 존속기한의 타당성 여부

- 법적근거
 -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10조(경영지원 등)
 - 「사회적기업 육성에 관한 법령」 제12조(경영지원업무의 위탁)
- 존속기한 : 조례 폐지 시까지 존속

7. 규제 집행의 적정성(조직·인력·예산)

가. 규제집행을 위한 조직·인력·예산 판단

- 별도의 조직·인력·예산 등이 소요되지 않음

나. 기존 조직·인력·예산으로 대체가능 여부

- 기존의 조직·인력·예산으로 대체 가능함

8. 구비서류·처리절차 등의 적정성

- 구비서류가 정해질 예정으로 법적 하자 없음.

인천광역시서구 공고 제2016 - 406호

「인천광역시 서구 푸른희망 서구의제21 실천협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구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인천광역시 서구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 03. 16.

인 천 광 역 시 서 구 청 장

인천광역시 서구 푸른희망 서구의제21 실천협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지속가능발전법 제정에 따른 조례의 근거법률을 반영하고, 전국적인 공통사항인 “지속가능발전협의회”로의 명칭변경, 기본이념 조항의 신설 및 일부 불합리한 조항의 개정을 통하여 원활하고 효율적인 지방의제21 지원을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조례명칭을 종전의 “인천광역시 서구 푸른희망 서구의제21 실천협의회 구성 및 운영조례”에서 “인천광역시 서구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설치 및 운영조례”로 변경
- 협의회 명칭을 종전의 “인천광역시 서구 푸른희망 서구의제21실천협의회”에서 “인천광역시 서구 지속가능발전협의회”로 변경
(안 제1조)
- 명칭변경에 따른 협의회 기본이념 신설 및 관련조항 정비(안 제2조의2 등)
- 재정지원 항목을 종전의 “소요사업비”에서 “운영비, 인건비, 실천사업비, 기타 경비”로 구체적으로 명기(안 제18조)
- 위원 위·해촉권자를 “공동대표”에서 “구청장”으로 변경하여 권한을 명확하게 하고 매기 출범시의 원활한 업무추진 도모(안 제4조)
- 기타 불합리한 규정 정비 및 띄어쓰기 등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의거한 일부조문 개정(안 제2조~제12조, 제15조~제19조)

3. 의견제출

이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16년 4월 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참조 : 기획예산실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제출자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 의견제출 방법 : 우편, 전화, 팩스
 - 주소 : (우)22726 인천광역시 서구 서곶로 307(심곡동)
 - 전화 : 560-4062, 팩스 : 560-2703

4. 참고사항

인천광역시 서구 푸른희망 서구의제21 실천협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서구 조례 제 호

인천광역시 서구 푸른희망 서구의제21 실천협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서구 푸른희망 서구의제21 실천협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인천광역시 서구 푸른희망 서구의제21 실천협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를 “인천광역시 서구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

제1조 중 “인천광역시서구(이하 “서구”라 한다)”를 “「지속가능발전법」에 따라 국제연합 환경개발회의 권고사항인 지방의제21을 충실히 이행하고, 인천광역시 서구”로 하고, 같은 조 “지속 가능한 개발”을 “지속가능한 발전”으로 하며, 같은 조 “위하여 푸른희망 서구의제21 실천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의 구성”을 “위한 인천광역시 서구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설치”로 한다.

제2조 중 “정의는”을 “뜻은”으로 한다.

제2조제1호 중 “이라 함은 서구의”를 “이란 인천광역시 서구의”로 하고, “지속 가능한 개발”을 “지속가능한 발전”으로 한다.

제2조제2호 중 “ “지속 가능한 개발”이란 미래 우리 후손의 인간다운 삶의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능력과 여건을 저해하지 않도록 개발과 보

전이 조화를 이루면서 현 세대의 욕구를 충족시키는 개발을 말한다.”를
 “ “지속가능한 발전”이란 지속 가능성에 기초하여 경제의 성장, 사회의
 안정과 통합 및 환경의 보전이 균형을 이루는 발전을 말한다.”로 한다.
 제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조의2(기본이념) 인천광역시 서구 지속가능발전협의회(이하 “협의회
 ”라 한다)는 현재세대와 미래세대가 보다 나은 삶의 질을 누릴 수 있도
 록 경제·사회·환경 등 자원의 개발과 보전이 조화와 균형을 이루는 지속
 가능한 발전을 기본이념으로 한다.

제3조제1호 중 “실천추진”을 “실천”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지속
 가능한 개발”을 “지속가능한 발전”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호 중 “푸른희
 망 서구의제21”을 “협의회”로 하고, 같은 조 제4호 중 “기타”를 “그 밖
 에”로 한다.

제4조제1항 중 “인천광역시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한다)”를 “인천
 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로, “3인”을 “3명”으로, “150
 인”을 “150명”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푸른희망 서구의제21”을 “협
 의회”로, “관련분야 공무원,학계,기업,구의회 의원,기타”를 “관련 분야 공
 무원, 학계, 기업, 시·구의회 의원, 그 밖의”로, “자로서 공동대표가 위
 축하는 자가 된다.”를 “사람으로서 구청장이 위축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관련분야”를 “관련 분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단서 중 “다
 만,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하며 공무원은 당해 재직
 기간으로 한다.”를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

로 하며 공무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로 한다.

제5조제3항 중 “3인”을 “3명”으로 한다.

제6조 중 “제4조 제3항의 규정은 의장단의 임기에 준용한다.”를 “의장단의 임기는 제4조제4항에 따른다.”로 한다.

제7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공동대표는”를 “구청장은”으로 하고, “1에”를 “어느 하나에”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기타”를 “그 밖의”로 하며, 같은 조 제4호 중 “기타 제5조 제2항의”를 “그 밖에”로 한다.

제8조제2항제5호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한다.

제9조제2항 중 “30인”을 “30명”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제5호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한다.

제10조제2항 중 “30인”을 “30명”으로 한다.

제10조의1를 제10조의2로 한다.

제10조의2(중전의 제10조의1)제1항 중 “3인”을 “3명”으로 한다.

제11조제2항제1호 중 “제반”을 “모든”으로 한다.

제12조제2항 중 “년1회”를 “연 1회”로 한다.

제15조 중 “2인”을 “2명”으로 하고, “비치하여야 한다.”를 “갖추어 놓아야 한다.”로 한다.

제16조 중 “관계전문가”를 “관계 전문가”로 한다.

제17조 중 “서구의제21”을 “서구의제21의”로 한다.

제18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구청장은 협의회를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

음 각 호의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1. 협의회 운영비 및 인건비
2. 협의회 실천사업비
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

제18조의1를 제18조의2로 한다.

제18조의2(종전의 제18호의1) 중 “의하여”를 “따라”로, “범위 내에서”를 “범위에서”로 한다.

제19조 중 “시행에 관하여”를 “시행에”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u>인천광역시 서구 푸른희망 서구의제21 실천협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u></p> <p>제1조(목적) 이 조례는 <u>인천광역시서구(이하 "서구"라 한다)의 환경적으로 건전하고 지속 가능한 개발과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지역단위 행동계획인 푸른희망 서구의제21을 작성하고 실천하기 위하여 푸른희망 서구의제21 실천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u></p> <p>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p> <p>1. "푸른희망 서구의제21"이라 함은 서구의 주민·기업·구가 주체가 되어 상호 협의하여 작성코자 하는 지역단위 행동목표와 실천계획으로 환경적으로 건전하고 <u>지속 가능한 개발을 위해 주민·기업·구가 실천해</u></p>	<p><u>인천광역시 서구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u></p> <p>제1조(목적) ----- 「<u>지속가능발전법</u>」에 따라 <u>국제연합 환경개발회의 권고사항인 지방의제 21을 충실히 이행하고, 인천광역시 서구----- 지속가능한 발전----- 위한 인천광역시 서구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설치 -----.</u></p> <p>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p> <p>1. -----<u>이란 인천광역시 서구의-----</u> ----- ----- ----- <u>지속가능한 발전</u>-----</p>

야 할 과제를 말한다.

- 2. "지속 가능한 개발"이라 함은 미래 우리 후손의 인간다운 삶의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능력과 여건을 저해하지 않도록 개발과 보전이 조화를 이루면서 현 세대의 욕구를 충족시키는 개발을 말한다.

<신 설>

제3조(사업)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 1. 푸른희망 서구의제21의 작성 및 실천추진에 관한 사항
- 2. 환경적으로 건전하고 지속 가능한 개발을 위한 정책추진에 관한 사항
- 3. 푸른희망 서구의제21의 목적 달성을 위한 교육·계몽사업 및 시민참여 운동 전개에 관한

-----.

- 2. "지속가능한 발전"이란 지속 가능성에 기초하여 경제의 성장, 사회의 안정과 통합 및 환경의 보전이 균형을 이루는 발전을 말한다.

제2조의2(기본이념) 인천광역시 서구 지속가능발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는 현재세대와 미래세대가 보다 나은 삶의 질을 누릴 수 있도록 경제·사회·환경 등 자원의 개발과 보전이 조화와 균형을 이루는 지속가능한 발전을 기본이념으로 한다.

제3조(사업) -----
-----.

- 1. -----
---실천-----
- 2. ----- 지속 가능한 발전-----

- 3. 협회의 -----

사항

4. 기타 협의회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4조(협회의 구성) ① 협의회는 인천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 기업대표, 주민대표 등 3인의 공동대표를 포함한 15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은 푸른희망 서구의제21에 관심이 있고 지역발전에 헌신적인 구민, 관련분야 공무원, 학계, 기업, 구의회 의원, 기타 전문가 등 각계각층을 대표하는 자로서 공동대표가 위촉하는 자가 된다.

③ 당연직 위원은 관련분야 실·과장 및 구의회에서 추천한 의원으로 한다.

④ 모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하며 공무원은 당해 재직기간으로 한다.

제5조(협회의 기구와 임원) ①

4. 그 밖에 -----

제4조(협회의 구성) ① -----

인천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

-----3명-----

--150명-----

②----- 협의회-----

----- 관련 분야 공무원

원, 학계, 기업, 시·구의회 의

원, 그 밖의 -----

--- 사람으로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③----- 관련 분야 --

-----.

④ -----

-----.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

의 남은 기간으로 하며 공무원

의 임기는 해당 직위에 재직하

는 기간으로 한다.

제5조(협회의 기구와 임원) ①

<p>· ② (생략)</p> <p>③협의회에는 <u>3인</u>의 공동대표로 구성된 의장단을 둔다.</p>	<p>· ② (현행과 같음)</p> <p>③----- <u>3명</u>----- -----.</p>
<p>④·⑤ (생략)</p> <p>제6조(의장단의 임기) <u>제4조 제3항</u>의 규정은 의장단의 임기에 준용한다.</p>	<p>④·⑤ (현행과 같음)</p> <p>제6조(의장단의 임기) <u>의장단의 임기</u>는 제4조제4항에 따른다.</p>
<p>제7조(위원의 해촉) <u>공동대표</u>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u>1</u>에 해당하는 때에는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p> <p>1. 위원이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u>기타</u>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울 경우</p> <p>2.·3. (생략)</p> <p>4. <u>기타 제5조 제2항</u>의 의장단에서 해촉함이 타당하다고 의결하였을 경우</p>	<p>제7조(위원의 해촉) <u>구청장</u>은----- ----- <u>어느 하나</u>에 ----- -----.</p> <p>1. ----- ----- <u>그 밖의</u> ----- -----</p> <p>2.·3. (현행과 같음)</p> <p>4. <u>그 밖에</u>----- ----- -----</p>
<p>제8조(총회의 구성과 기능) ① (생략)</p> <p>②총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p> <p>1. ~ 4. (생략)</p> <p>5. <u>기타</u> 협의회 주요업무처리에 관한 사항</p>	<p>제8조(총회의 구성과 기능) ① (현행과 같음)</p> <p>②----- -----.</p> <p>1. ~ 4. (현행과 같음)</p> <p>5. <u>그 밖에</u> ----- -----</p>
<p>제9조(운영위원회의 구성과 기능)</p>	<p>제9조(운영위원회의 구성과 기능)</p>

① (생략)

② 운영위원회는 각 분과위원회의 위원장과 간사, 구의원, 공무원 등 30인 이내로 구성하며, 위원장 및 간사는 운영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 1. ~ 4. (생략)
- 5. 기타 공동대표 및 운영위원장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

제10조(분과위원회) ① (생략)

② 각 분과는 분과위원장을 포함한 3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생략)

제10조의1(감사) ① 협의회에 3인 이내의 감사를 두며, 운영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공동대표가 임명한다.

② (생략)

제11조(사무국) ① (생략)

② 사무국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① (현행과 같음)

② -----

----- 30명 -----

-----.

③ -----
-----.

1. ~ 4. (현행과 같음)

5. 그 밖에 -----

제10조(분과위원회) ① (현행과 같음)

② -----
----- 30명 -----
-----.

③ (현행과 같음)

제10조의2(감사) ① ----- 3명

-----.

② (현행과 같음)

제11조(사무국) ① (현행과 같음)

② -----
-----.

